

“우리의 발전은 관세사 상호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관세사회

KCBA

수신자: 전희원

신우미

(경유)

고희원

제 목: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대한 수입통관 관리 강화 안내

박미영

1. 관세청 통관기획과-3508('19.7.25.)과 관련입니다.

이명희
김정희

2.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즐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의 수입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등 세액탈루를 위해 앞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즐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용액으로 허위 신고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에 대한 성실신고율 유도하고 무분별한 즐기·뿌리 추출 니코틴용액의 수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오니 회원님의 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고, 해당 수입업체 등에 수입통관 관리 강화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담배 즐기·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수입통관 관리강화>

- o 품목: 즐기·뿌리 추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HSK 제3824.99-9041호, 제8543.70-4010호)
- o 조치사항: 즐기·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수입신고 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 징구후 신고수리(증빙자료 미제출시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 조치 예정)
 - * ①거래계약서, ②수출국내 즐기·뿌리 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즐기 구매단계부터 액상 추출 및 수출단계까지 제조공정별로 구분), ③즐기·뿌리추출 니코틴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자 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등 ④품명란 등에 ‘즐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이 기재된 수출국 발행 수출신고필증
- o 시행: '19.9.2.(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조현욱 행정관). 끝.